



이달의 초점

## 위기 청년 지원과 과제

---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하솔잎|**

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성아|**

위기 청년 지원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

**|박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위기 청년 지원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

Institutionalizing Support for Vulnerable Youth: Significance and Policy Challenges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분부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청년 복지정책에서 중대한 변화인 고립·온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25년 3월 25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기반 조성,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직적 한계, 적용적 한계, 대상 범위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위기 청년은 취약계층 청년, 사각지대 청년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위기 청년이라는 용어가 대두된 이유는 청년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위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sup>1)</sup> 즉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온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쟁점이다.<sup>2)</sup>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고립·온둔 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취약 청년 계층 등 위기 청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정책적으로 시작된 것은 청년정책의 중요한 변화이다.<sup>3)</sup> 예컨대 종전부터 위기 청년에 대한 개별

1) 송경원. (2023.). 위기·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319호.

2) 보건복지부. (2024. 2. 27.).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보도자료].

3) 송경원. (2023). 위기·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319호.

적인 정부의 정책(예: 정부의 2021년 가출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신설, 대구 청년 베이스캠프(위기 청년 지원) 등)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현행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도 위기 청년에 대하여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 청년 조기 발굴, 사례관리 체계 내실화'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sup>4)</sup>

법제도적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청년 전체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은 위기 청년을 포함한 청년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위기 청년에 특정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위기 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5일(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및 2027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다. 이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구

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sup>5)</sup>

「위기아동청년법」은 2025년 3월 25일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2026년과 2027년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위기아동청년법」에 대한 입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 2 현행 위기 청년 지원 관련 법제

현행 위기 청년 지원 관련 법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위기아동청년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관련 법률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6)</sup>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개별법인데, 법률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국가기획위원회. (2025. 8.).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13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미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InfoP.do?lsSeq=270215&lsId=&efYd=202703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6) 박광동. (2021).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2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대한 개별법인데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대한 개별법이면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은 아동과 청년을 포함하는 특별법인 반면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 고용 분야와 농어업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째, 관련 법률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sup>7)</sup>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위기

아동청년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은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은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

셋째, 관련 법률의 청년 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이 법 시행령 제2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7) 박광동. (2021).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26.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 법 시행령 제3조). 그런데 「위기아동청년법」상 위기 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① 가족돌봄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② 고립·온둔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족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위기아동청년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은 아동·청년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위기 청년 지원 관련 법률(「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40세 미만)과 달리 청년의 하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관련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발전, 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청년 발전, 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년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특별법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청년 고용 촉진 규정은 위기 청년 지원 법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제5조). 이 법률은 위기 청년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에 대해 관련이 있다. 그런데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 법률은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위기 아동·청년 지원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 법의 성격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관련 법률의 주요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에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 창업 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 주거 지원(제20조),

청년 복지증진(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 등 8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은 위기 청년 지원 법제의 근거를 이룬다.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의 행정지원 체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후계농어업 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제8조),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제

9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제10조),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제11조),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제12조), 청년농어업인 우대(제13조)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절차,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위기 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다.

[표 1] 현행 위기 청년 지원 관련 법제 비교

|    | 「청년기본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위기아동청년법」  |
|----|--|--|---|--|
| 목적 |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  |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   |
| 대상 |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 위기 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①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② 고립·온둔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 |

[표 1] 계속

|            | 「청년기본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위기아동청년법」  |
|------------|---|--|---|--|
| 주요 내용      | 청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제10조(청년 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절차, 사회 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위기 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 등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명문 규정 없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위기 청년 관련성  | 위기 청년 지원 법제의 근거   | 위기 청년 고용촉진 관련                                      | 위기 청년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관련  |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법률                                       |

### 3 「위기아동청년법」의 제정과 그 영향

#### 가. 입법 과정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 제정 이전에 국회에는 「위기아동청년법」과 관련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청년자립 지원법안」 등 다양한 법률 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온둔 아동·청년 등 위기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조직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선정하며,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심리상담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법안과 관련하여 종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의 법률안에 아동과 청년

8) 국회. (2025. 2. 14.). 제22대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회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740&type=view>

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문제점 및 전달체계상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sup>9)</sup> 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법」 관련 법안 심사에서는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아동·청년 관련해서 기본법이자 특별법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기 아동·청년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나누기 보다 하나의 제도 안에서 유형별 프로세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sup>10)</sup>

「위기아동청년법」이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이래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을 장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 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sup>11)</sup>

[표 2] 국회 계류 또는 폐기된 법률안(기준 시기 2023~2025)<sup>12)</sup>

| 입법안   | 제안 이유  |
|---|--|
| [220995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2025-04-18)[계류 중] <sup>1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li> <li>- 이에 위기 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 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li> </ul> |

9) 국회. (2025. 1. 21.).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691&type=view>

10) 국회. (2025. 1. 21.).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691&type=view>

11) 국회. (2025. 4. 18.). [220995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

12) 「위기아동청년법」의 입법화 과정에 대안반영 폐기된 입법안 및 임기만료 폐기된 입법안이 존재한다. 대안반영 폐기된 입법안 및 임기만료 폐기된 입법안의 경우 제정 목적의 경우에는 각각 차이점이 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기아동청년법」 제정 시의 다양한 입법 논거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국회. (2025. 4. 18.). [220995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

## [표 2] 계속

| 입법안   | 제안 이유   |
|---|---|
|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2-26)[원안가결] <sup>14)</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li> <li>-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 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온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li> <li>-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 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li> </ul>  |
| [220764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김남희 의원 등 11인)(2025-01-20)[대안반영폐기] <sup>15)</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함.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11~18세 인구의 5~8%인 18만 4000명에서 29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됨.</li> <li>-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8세 미만의 돌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li> <li>-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li> </ul> |
| [2207308]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등 10인)(2025-01-07)[대안반영폐기] <sup>16)</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자립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li> <li>-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온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li> <li>-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li> <li>-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온둔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li> </ul>              |

14) 국회. (2025. 2. 26.).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V5P0R2V0R3M1T6V3Z4S2C6E1G0S2](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V5P0R2V0R3M1T6V3Z4S2C6E1G0S2)

15) 국회. (2025. 1. 20.). [220764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김남희 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J2J5H0I1H1F7F2O1M1M8K4M4K6K3G9](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J2J5H0I1H1F7F2O1M1M8K4M4K6K3G9)

16) 국회. (2025. 1. 7.). [2207308]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T2T2B3C1A6B0Z8X3Y4G5H3F3](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T2T2B3C1A6B0Z8X3Y4G5H3F3)

## [표 2] 계속

| 입법안   | 제안 이유   |
|---|---|
| [2207086]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br>- 이러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아직 빈약한 상태임.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과 취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영케어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br>- 이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2205452]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등 10인)[2024-11-11][대안반영폐기] <sup>17)</sup>  | -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온둔 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청년은 약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br>-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br>-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220544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등 11인)[2024-11-11][대안반영폐기] <sup>19)</sup>  | -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br>-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립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br>- 이에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17) 국회. (2024. 12. 30.). [2207086]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U2T1R9S1Z1B3Z1Z3X9W2X5S3](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U2T1R9S1Z1B3Z1Z3X9W2X5S3)18) 국회. (2024. 11. 11.). [2205452]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T4S1Q1Q0Z7Z1X1Y0W3V0V9R8S6Q7](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T4S1Q1Q0Z7Z1X1Y0W3V0V9R8S6Q7)19) 국회. (2024. 11. 11.). [220544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I4J1H0G3E1F1N8M0K5L1K2G0E1D0](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I4J1H0G3E1F1N8M0K5L1K2G0E1D0)

[표 2] 계속

| 입법안  | 제안 이유   |
|--|---|
| [2204618]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2인)(2024-10-08)[대안반영폐기] <sup>20)</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보다 줄어든 기회 속에서 현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 의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 2023년 기준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들이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함.</li> <li>- 한편 사회진출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음. 2023년 기준 가족돌봄 청년 약 10만 명,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 명으로, 가족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청년들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학업 시간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성년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치열한 경쟁 앞에서 또래 동년배들에 비해 더욱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li> <li>- 최근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청년들을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실질적 지원 내용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li> <li>- 이에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 청년들을 위한 전담 발굴·지원 체계 구축 및 구체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li> <li>-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고립·은둔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 안전망이 취약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위기 청년 전담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궁극적으로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청년세대 내 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모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li> </ul> |
| [220306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등 13인)(2024-8-22)[대안반영폐기] <sup>2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li> <li>-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li> <li>-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li> <li>- 이에 위기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li> </ul>   |
| [2202944]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6인)(2024-8-19)[대안반영폐기] <sup>2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기준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 줌.</li> <li>-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li> <li>-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li> </ul>  |

20) 국회. (2024. 10. 8.). [2204618]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2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E4E1C0D0L4J11H0I8Y4W9V6V6U1](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E4E1C0D0L4J11H0I8Y4W9V6V6U1)

21) 국회. (2024. 8. 22.). [220306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등 13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00N7L2M6L1T4R3Q9R5P6X3W4V4](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00N7L2M6L1T4R3Q9R5P6X3W4V4)

22) 국회. (2024. 8. 19.). [2202944]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6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H3H3G1](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H3H3G1)

[표 2] 계속

| 입법안   | 제안 이유  |
|---|--|
| [2202603]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등 20인)(2024-08-07)[대안반영폐기] <sup>2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온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li> <li>-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li> <li>-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li> </ul> |
| [220243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등 10인)(2024-07-31)[대안반영폐기] <sup>24)</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li> <li>-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li> </ul>   |
|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등 10인)(2024-05-01)[임기만료폐기] <sup>25)</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아동·청소년·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li> <li>-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반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li> <li>-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li> </ul>   |

23) 국회. (2024. 8. 7.). [2202603]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등 2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J4R0R8P0O1K1J4H0G3O1P7O1M9L8](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J4R0R8P0O1K1J4H0G3O1P7O1M9L8)

24) 국회. (2024. 7. 31.). [220243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Y4W0X7V0W4R1Q6Q3P5P5O3O9W1W9](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Y4W0X7V0W4R1Q6Q3P5P5O3O9W1W9)

25) 국회. (2024. 5. 1.).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W4V0T3C2A8B1A4Y1U1V2U3S4R8Z4](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W4V0T3C2A8B1A4Y1U1V2U3S4R8Z4)

[표 2] 계속

| 입법안  | 제안 이유  |
|--|--|
| <p>[2121784]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등 12인) (2023-05-04)[임기만료폐기]<sup>26)</su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 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li> <li>-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에 머무르는 취약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지원할 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각기 나뉘어져 천차만별로 시행되는 실정임. 정책 수요도 크고 이에 호응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급 의지도 확인되나 정책 전달체계가 부실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는 지원 정책이 남발되고 있음.</li> <li>- 또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노인과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별 지원법의 경우 이미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기를 막 끝내고 본격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요구받는 청년은 가까운 미래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함.</li> <li>-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청년의 고립에 적극 대응하여 독립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li> <li>- 이에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 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li> </ul> |
| <p>[212084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등 23인) (2023-03-23)[임기만료폐기]<sup>27)</sup></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 및 지원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li> <li>-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li> </ul>  |

26) 국회. (2023. 5. 4.). [2121784] 청년자립 지원법안(윤창현 의원 등 12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V3T0P4O2M6N1M4U3V2U1T9A0Z8Y8](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V3T0P4O2M6N1M4U3V2U1T9A0Z8Y8)

27) 국회. (2023. 3. 23.). [212084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등 23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O3P0E3D1B4A1I1J2H3G1F9N6O8N4](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O3P0E3D1B4A1I1J2H3G1F9N6O8N4)

## 나. 법률의 구조와 내용

「위기아동청년법」의 구조는 총 7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목적, 정의, 위기 아동·청년 지원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루는 총칙, 제2장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3장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절차, 제4장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5장 위기 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시범사업, 개인정보보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한 보칙에 대하여, 제7장은 별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3] 법체계**

### 「위기아동청년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위기아동·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

-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제24조(위기아동·청년 데이터 제공·활용 등)
- 제25조(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 제26조(전문기관 인증)
- 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취소)

#### 제2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8조(실태조사)
-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 제6장 보칙

- 제28조(시범사업)
- 제29조(개인정보보호)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 제10조(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
- 제11조(사례관리 신청)
- 제12조(상담)
-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제7장 별칙

- 제31조(별칙)
- 제32조(과태료)

#### 부칙

####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 제16조(건강관리 지원)
-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 제18조(주거지원)
-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 제20조(고립·온둔 과학적 척도 개발)
- 제21조(고립·온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위기아동청년법」에서는<sup>28)</sup> 첫째,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정의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하였다(「위기아동청년법」 제2조).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위기아동청년법」 제6조 및 제8조).

셋째, 위기 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위기 아동·청년 실태조사에서 도움 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된 사람이나 사례관리를 신청한 도움 필요 아동·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돌봄 지원 대상자 및 고립·은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마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넷째,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위기아동청년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 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위기아동청년법」 제26조).

## 라. 영향

「위기아동청년법」의 사회적 의의로는 크게 첫째,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의 해소이다. 즉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였는데,<sup>29)</sup> 복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위기 아동·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 기여라는 의의가 있다. 즉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미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IsInfoP.do?IsiSeq=270215&IsId=&efYd=20260326&chrClsCd=010202&urlMode=IsEfInfoR&viewCls=IsRvsDocInfoR&ancYnChk=0#>

29) 보건복지부. (2024. 2. 27.).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보도참고자료].

포함시키고,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sup>30)</sup> 셋째,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의 법적 근거 마련하게 되었다. 즉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 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sup>31)</sup>

「위기아동청년법」의 정책적 의의로는 크게 첫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sup>32)</sup>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책을 위한 기반 연구 및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 4 「위기아동청년법」의 법제적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위기아동청년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조직적 한계, 적용적 한계, 대상 범위의 한계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직적 한계로는 「위기아동청년법」의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서 타당성이 있으나, 주관 부서는 청년정책팀으로 되어 있다. 위기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청년에 대하여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정책팀에서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적용적 한계로는 「위기아동청년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에 따르면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기 아동청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이 법이

30)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청년정책팀. (2025. 2. 28.).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18>

31) 국회. (2025. 4. 18.). [220995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

32) 2022년 정책 도입 당시 정부는 국립국어원의 제안에 따라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국어 명칭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사용하였으며, 관련 연구와 지자체 조례에서도 동일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이후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까지 포함하는 ‘가족돌봄아동·청년’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원어의 ‘care’를 가족돌봄으로 명명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김송이. (2025. 6.). 영 케어러 지원 법제화와 정책 쟁점. *한국가족복지학*, 72(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기 아동·청년 지원 기본법이면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이 분산화 또는 형해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위기아동청년법」은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런데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기아동청년법」의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에 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대상 범위의 한계로는 「위기아동청년법」 제2조에서 ‘위기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①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② 고립·온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족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위기 아동·청년의 연령 범위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청년기본법」(19세 이상 34세 이하)과는 연령 범위가 일치하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과는 연령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은 대상 연령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년법」의 연령 범위가 아동·청소년·청년을 모두 아우르면서 다른 법률의 연령 범위와 중첩되고, 이 때문에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한다. 더욱이 「위기아동청년법」상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기아동청년법」 하위 법령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없게 되면 「위기아동청년법」의 제정 취지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 청년 조기 발굴·사례관리 체계 내실화’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미래센터가 이러한 영역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지역적·기관적 측면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계획 및 기반 조성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기아동청년법」은 조직적 한계, 적용적 한계, 대상 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조직적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위기아동청년법」 주관 부서의 적절성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년정책팀과 별도로 「위기아동청년팀」을 신설하는 방안, 청년정책팀과 아동정책과(또는 아동보호자립과) 등 여러 부서를 관할 부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적용적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위기아동청년법」이 위기 아동·청년 지원 기본법이면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면 ① 「위기아동청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예: 이 법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기아동청년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예: 이 법은 위기 아동·청년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 내용보다 더 강화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기아동청년법」 제9조의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에 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 범위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위기아동청년법」 제2조에서 '위기 아동·청년' 연령 범위를 아동·청소년·청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상의 전달체계를 반영한 유형별 실천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하위 법령에서 규

#### [표 4] 현행 위기 청년 지원 관련 조례

##### 조례명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등

#### [표 5] 위기 아동·청년 조례 표준안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지원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 제11조(전담조직 지정·위탁 등)

##### 제12조(사무의 위탁)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제14조(종복지원의 제한)

##### 부칙

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법」 제22조상의 전담 조직 지정·위탁과 관련한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 청년 조기발굴·사례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위 법령을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현재 법체계 구조에서 아동은 크게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 등의 구조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은 「청년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은 관련 대상별로 개별 복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청년의 경우에는 기본법인 「청년기본법」만 시행되고 있다.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 청년에 한정되는 법률이다. 과도기적 또는 일시적 위기 청년 및 전체 청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본사회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위기아동청년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위기아동청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심리상담 지원 등(제15조), 건강관리 지원(제16조), 학업 및

취업 지원(제17조), 주거 지원(제18조),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제19조), 고립·온둔 과학적 척도 개발(제20조), 고립·온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제21조), 전담 조직의 지정·위탁(제22조), 인증된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제26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제3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위기 아동·청년을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가칭 「위기아동청년 조례 표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나가며

위기 청년인 고립·온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청년 복지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청년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청년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법률은 각각의 법률상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 및 지역 대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통일적으로 위기 청년에 대하여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이 「위기아동청년법」이다.

「위기아동청년법」은 총 7장(제1장 총칙, 제2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5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6장 보착, 제7장 벌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위기아동청년법」은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기반 조성 기여,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주관 부서의 조직적 한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문 규정 부재로 인한 적용의 한계, 위기 아동·청년의 연령 범위와 전담 기관 역량 강화 대상 범위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를 여러 부서로 하거나 위기아동청년팀을 새로 만드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기아동청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방안과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령 범위 설정 및 전담 기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있어야 한다. ■

## 참고문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go.kr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기획위원회. (2025. 8.).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회. (2023. 3. 23.). [212084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서영석 의원 등 23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O3P0E3D1B4A1I1J2H3G1F9N6O8N4](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O3P0E3D1B4A1I1J2H3G1F9N6O8N4)

국회. (2023. 5. 4.). [2121784] **청년자립 지원법안** (윤창현 의원 등 12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V3T0P4O2M6N1M4U3V2U1T9A0Z8Y8](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V3T0P4O2M6N1M4U3V2U1T9A0Z8Y8)

국회. (2023. 7. 31.). [2202436]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서영석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Y4W0X7V0W4R1Q6Q3P5P5O3O9W1W9](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Y4W0X7V0W4R1Q6Q3P5P5O3O9W1W9)

국회. (2024. 10. 8.). [2204618]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2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E4E1C0D0L4J1I7H0I8Y4W9V6V6U1](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E4E1C0D0L4J1I7H0I8Y4W9V6V6U1)

국회. (2024. 11. 11.). [220544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 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I4J1H0G3E1F1N8M0K5L1K2G0E1D0](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I4J1H0G3E1F1N8M0K5L1K2G0E1D0)

국회. (2024. 11. 11.). [2205452]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0인). 국회

- 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S2T4S1Q1Q0Z7Z1X1Y0W3V0V9R8S6Q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S2T4S1Q1Q0Z7Z1X1Y0W3V0V9R8S6Q7)
- 국회. (2024. 12. 30.). [2207086]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 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U2T1R9S1Z1B3Z1Z3X9W2X5S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U2T1R9S1Z1B3Z1Z3X9W2X5S3)
- 국회. (2024. 5. 1.).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Y2W4V0T3C2A8B1A4Y1U1V2U3S4R8Z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Y2W4V0T3C2A8B1A4Y1U1V2U3S4R8Z4)
- 국회. (2024. 8. 19.). [2202944]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6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H3H3G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A0Y7X2F5D1E6C2B8J4I8H3H3G1)
- 국회. (2024. 8. 22.). [220306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의원 등 13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O0N7L2M6L1T4R3Q9R5P6X3W4V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T2S4O0N7L2M6L1T4R3Q9R5P6X3W4V4)
- 국회. (2024. 8. 7.). [2202603]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2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K2J4R0R8P0O1K1J4H0G3O1P7O1M9L8](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K2J4R0R8P0O1K1J4H0G3O1P7O1M9L8)
- 국회. (2025. 1. 20.). [220764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김남희 의원 등 11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J2J5H0I1H1F7F2O1M1M8K4M4K6K3G9](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J2J5H0I1H1F7F2O1M1M8K4M4K6K3G9)
- 국회. (2025. 1. 21.).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691&type=view>
- 국회. (2025. 1. 7.). [2207308]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서미화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T2T2B3C1A6B0Z8X3Y4G5H3F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V2W4U1T2T2B3C1A6B0Z8X3Y4G5H3F3)
- 국회. (2025. 2. 14.). 제22대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회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740&type=view>
- 국회. (2025. 2. 26.).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P2V5P0R2V0R3M1T6V3Z4S2C6E1G0S2](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P2V5P0R2V0R3M1T6V3Z4S2C6E1G0S2)
- 국회. (2025. 4. 18.). [220995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Page.do?billId=PRC_E2C5C0B4Z0A9P1P7O2P9N3N2L8U0U1)
- 김송이. (2025. 6.). 영 케어러 지원 법제화와 정책 쟁점. **한국가족복지학**, 72(2).
- 박광동. (2021).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미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270215&lslId=&efYd=20270326&chrClCd>

=010202&urlMode=lsEInfoR&viewCls=ls

RvsDocInfoR&ancYnChk=0#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청년정책팀. (2025.

2. 28.).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

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

View.do?newsId=148940118

보건복지부. (2024. 2. 27.).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

**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보도자료].

송경원. (2023. 5.). 위기·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319호, 2-4.

청년기본법.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Institutionalizing Support for Vulnerable Youth: Significance and Policy Challenges

Park, Kwang D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nacted on March 25 this year, the Act on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with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etc. lay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ongoing effort to reduce gaps in support for young people identified as socially withdrawn and isolated or as young family caregivers, an effort that itself marks a significant change to Korea's youth welfare policy. The Act's soci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bstantial: it calls for greater state involvement not only in addressing gaps in the existing support system for young people in crisis but also in strengthening their protection and helping them build tailored foundations for independent living. However, the Act faces several limitations in its implementation. A legislative review is needed to clarify responsible organizations, delineate the Act's jurisdiction over related policy programs, and define the scope of potential beneficiaries.